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 2027년 개최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출연금 등의 지원 (안 제3조)
-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안 제6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임.
- 충청권 공동유치에 따라 4개 시도가 지원 조례를 마련 중에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는 입법예고 중에 있음.
-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유치위원회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24개의 지자체가 사단법인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있음. 따라서 충청북도가 유치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충청북도보다 먼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한 광주의 경우나 2011년 국제육상대회를 개최한 대구시의 경우 유치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구성하여 출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음에도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조례안 제9조에는 잔여재산 귀속에 관하여 유치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출연금,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면서 남은 재산의 처리를 법률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관에 따르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붙임: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끝.